

사회봉사활동 운영 규정

제정 2026. 4. 6.

제 1장 총 칙

제1조(적용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.)의 교직원 및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규정은 자연사랑, 인간사랑, 문화사랑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봉사의 참뜻을 배우고,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과 아름다운 사회봉사 문화의 전통을 대학에 정립시키는데 있다.

제 2장 사회봉사단

제3조(설치) 본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봉사활동 수행에 필요한 예산 등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봉사단을 둔다.

제4조(위치) 본 봉사단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내에 둔다.

제5조(사업) 본 봉사단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.

- ① 학생과 교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지원 및 관리
- ②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지원
- ③ 국내·외 봉사기관 선정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
- ④ 사회봉사활동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과 봉사활동 계획수립
- ⑤ 사회봉사활동의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
- ⑥ 사회봉사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평가
- ⑦ 기타 위 업무에 관계되는 사업

제6조(교직원의 사회봉사 범위) 교직원의 사회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 활동
- ② 비영리 민간 및 공공단체 지원 활동
- ③ 대학의 각종 평가 및 교육개혁 관련 활동
- ④ 공공기관 의뢰, 교육, 강연, 평가, 출제, 심의위원 활동
- ⑤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, 교육 및 특별 강연

- ⑥ 산업체 경영 지도 및 자문
- ⑦ 학생 봉사활동 지도
- ⑧ 기타 위 활동에 준하는 각종 사회봉사 활동

제7조(학생의 사회봉사 범위) 학생의 사회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
- ② 지역사회 개발 및 발전에 관한 활동
- ③ 환경 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
- ④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에 관한 활동
- ⑤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
- ⑥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
- ⑦ 대학 내 필요한 제반 봉사활동
- ⑧ 공인 기관에서 실시하는 해외 봉사활동
- ⑨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봉사활동

제8조(조직) 본 봉사단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.

제9조(단장) ① 단장은 총장으로 한다.

② 단장은 본 봉사단을 대표한다.

제10조(부단장) 부단장은 직원인사 담당 부서장과 학생 담당 부서장이 담당하고, 단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행정간사) 행정간사는 교직원과 학생의 사회봉사업무 담당자로 하며 봉사단 행정업무 및 봉사단 운영,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제3장 단 원

제12조(자격) 본 봉사단 단원은 교직원 및 학생으로 한다.

제13조(가입) 제2조의 자격이 있고 본 봉사단의 목적에 동의하는 교직원 및 학생은 단원으로 간주한다.

제14조(권리와 의무) 단원은 사회봉사활동 사업 및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.

제15조(자격상실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단원의 자격이 상실된다.

- ① 본 봉사단의 목적 위배
- ② 본 봉사단의 명예 손상
- ③ 본 봉사단 탈퇴
- ④ 본인 유고

제4장 특 전

제16조(특전) 봉사활동 참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.

- ① 봉사활동 우수자는 해외봉사활동 지원시 우선선발 기회 부여
- ② 학생의 경우 학적부상 사회봉사활동 명기
- ③ 봉사활동 우수자는 시상
- ④ 봉사활동 증명서 발급

제17조(교직원의 봉사상) 본교는 건학이념에 따른 사회봉사활동 장려를 위하여 우수 봉사 활동 교직원 및 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교직원에게는 봉사상을 수여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4월 15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사회봉사단 조직표

